



제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업시행자의 주민 재정착 및 소득 창출 사업 지원〉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73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2211473)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사업시행자의 주민 재정착 및 소득창출 사업 지원(안 제9조3 신설)	2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221147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7. 15.
3. 회 부 일 : 2025. 7.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고난도 해상매립 공정을 포함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적기 완성을 위해서는 보상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현행법은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을 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사업협조를 유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9조의3).

Ⅲ. 검토의견

1. 사업시행자의 주민 재정착 및 소득창출 사업 지원(안 제9조의3 신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대책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3(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재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12월 기본계획 수립·고시 후 부지조성 공사 기본설계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25년 6월 해당 공사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상태임.¹⁾

1) 「참고1」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추진현황(자료: 국토교통부)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개요 】

구분		가덕도
사업 진행 단계	개발계획 수립	2021.9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사전 타당성	2022.4
	예비타당성	면제('22.4)
	기본계획	2023.12
	기본설계	수익계약 전환 후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나, 평가 결과 부적격 판정에 따라 재추진 필요
	실시설계	미착수
	공사입찰 및 계약	미착수
사업기간		'23~'32
사업시행자		(공항)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접근철도) 국가철도공단 (접근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예산 (백만원)	총사업비	15,658,004
	설계비	559,142
	공사비	14,254,874
	감리비	212,362
	시설부대비	16,441
	건설보상비	598,645
	기타	16,540

※자료 : 국토교통부

한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신공항 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주민의 재정착 지원 및 소득창출 사업 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²⁾

이에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의 재정착 및 소득창출 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2) 조선비즈, 「공항개발에 흔들리는 삶의 터전… 주민670명 ‘이주난민’ 되나」, 2025.7.10.
Btv news, 「가덕신공항 보상 문제도 난항 “우리는 어떻게 사나”」, 2025.7.14.

한편, 현행법 제2조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지만³⁾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어떤 종류의 지원 사업이 시행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소득창출 및 재정착 지원 사업의 시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신공항 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재정착 지원 및 소득창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들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고용추천 등 주민지원 사업이 명시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신공항건설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나.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다.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

마.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공항건설사업의 건설 종사자를 위한 임시숙소의 건설사업

2.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

3. 그 밖에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수용성을 제고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로, 「공공주택 특별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상황임.

【 주민 지원대책 관련 유사 입법례 】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 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이하 “쪽방 밀집지역”이라 한다)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u>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u>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① 법 제27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주택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 가. <u>전업(轉業)을 희망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u> 나. <u>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 알선</u> 다.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u>주택지구 안의 주민의 고용 추천</u> 2. 주택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 가. 제1호 각 목의 지원대책 나. <u>주택지구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u>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중 해당 쪽방 밀집지역의 쪽방 거주자가 100명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 가. 제2호 각 목의 지원대책 나.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u>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임시 거주 지원</u>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u>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입자 등(이하 “이주자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제33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입자 등(이하 “이주자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지원금의 규모 및 관리·운영 등) ①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 및 김천시에 지원하는 금액의 합계는 300억원 이내로 하고, 지원금의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u>1. 이주자등을 위한 전세금 융자, 이사비 지급, 저소득자 주택 구입비 보조 등 이주지원사업</u> <u>2. 저소득자 및 고령자 등에 대한 급식비, 난방비, 통신비 지원 등 생계비지원사업</u> <u>3. 첨단 영농단지 조성비 보조, 공동 창고시설 설치비 보조, 공동 농기구 구입비 보조 등 이주자등의 소득창출 지원사업</u> 4. 이주단지 내 마을회관 건설, 체육시설 설치, 공원조성 등 복지지원사업 5. 그 밖에 민원해소 등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평택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주자등의 지원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4조(관련 대책의 수립) ③ 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u>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그 밖에 주민 재정착과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2(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①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주민지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업을 희망하는 예정지역 주민(예정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u>직업전환훈련의 실시</u> 2.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단체”라 한다)에 대한 <u>소득창출사업의 지원</u> 3. 예정지역 주민(예정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u>직업알선</u> 4.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u>주거시설 및 생활안정 지원</u> ②건설청장 및 사업시행자가 수립·시행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전환훈련의 대상·훈련방법 및 훈련수당 등의 지급기준과 제1항제4호에 따른 주거시설의 종류 및 입주대상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청장이 정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립·시행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지원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로 정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분묘 이장, 지장물의 철거,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건설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세종특별자치시 소관 공공시설로 한정한다)의 청소·관리, 조경공사 등 세종특별자치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정부투자기관, 시공업체 등(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정지역 주민(예정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의 <u>고용을 추천할 수 있으며, 고용추천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u>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다만, 부칙 시행일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주민 재정착 지원대책 및 소득창출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하위법령의 충분한 정비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가덕도신공항법에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동의하는 입장임. 다만, 대통령령 개정을 위한 적절한 유예기간을 위해 부칙 시행일을 6개월로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0

참고 1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추진현황 [자료 : 국토교통부]

□ 사업 개요 [기본계획 고시 23.12 기준]

- 사업기간 : '23 ~ '30년 말(개항시점은 '29년 목표)
 - ※ (현재 준공시점 '32년) 기본계획 고시 후 입찰진행('24.5월~) 및 공기연장(+1년, '24.7월)
- 총사업비 : 13.5조원(공항부분)
 - ※ ('25.6월 기준 총사업비 : 15.7조원) 기본계획 고시 이후 접근교통망 총사업비 확정(도로 0.6, 철도 1.3) 및 공항부분 총사업비 증액(+0.2조원, 토지보상비)
- 공항시설 : 667만㎡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육·해상 일원)
 - (부지조성) 활주로 1본(3,500m), 계류장(74대), 항행안전시설(CAT-Ⅲ)
 - (건축공사) 여객터미널(20만㎡), 화물터미널(1.7만㎡), 주차장(1만대), 관제탑, 통합청사, 각종 부대시설 등 총 60여개 건물
 - (접근철도) 1공구 : L=8.5km(교량 1개소 포함), 차량사업소(개량)
2공구 : L=8km, 정거장 1개소 건축
 - (접근도로) L=9.3km(왕복 4차로), 교량 8개소, 터널 4개소
- 시행자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공항부분)
 - * (접근도로 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접근철도 시행자) 국가철도공단



<가덕도신공항 배치도>



<여객터미널 조감도>

□ 주요 추진경과

- '21. 3.16.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9.17. 시행)
- '21. 5. ~ '22.4. :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 '22. 4.26. :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 국무회의 의결
- '22. 4.29.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23. 8.25. : 기본계획수립(안) 발표
- '23. 10.24. :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 공포
- '23. 12.29. :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공항)
- '24. 3. ~ 6. : 국제여객터미널 등 건축 설계공모(3.14~), 계약(7.31)
- '24. 5. ~ 9. : 부지조성공사 발주(4회 유찰)
 - * 1·2차 유찰 이후 입찰조건을 변경하였으나, 3·4차 입찰도 단독입찰로 유찰
(공사기간 72→84개월, 설계기간 10→12개월, 상위 10대 社 공동수급 제한 2→3개 이내)
- '24. 8.29 : 접근도로 기본계획 고시
- '24. 9. 6 : 접근철도 기본계획 고시
- '24. 9.11 :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전환 방침
- '24. 10.28 :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착수
- '24. 12.20 : 가덕도신공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 '25. 2. 6 : 접근철도 제1공구 건설공사 기본설계 착수
- '25. 4.10 : 접근철도 제2공구 건설공사 기본설계 착수
- '25. 4.28 :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접수 및 보완 요구(국토부)
- '25. 5. 8 :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미보완 사유서 제출(현대)
- '25. 6.16 :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절차 중단(조달청)